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6. 21 선고 2024가단66825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종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5. 24.  
판 결 선 고 2024. 6. 21.

## 주 문

- 피고와 C 사이에 2023. 4. 28.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채무자)에을 상대로 양수금(시효연장)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8118호)을 하여, 2019. 12. 5. 'C은 원고에게 10,642,803원과 이에 대한 2010.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2. 24. 확정되었다.

나.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원고는 2023. 3. 29.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신청(대구지방법원 D)을 하였고, 2023. 5. 17. 유체동산압류집행을 마쳤다.

다. 채무자는 처 E과 함께 2023. 4.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채무자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마. 채무자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이후에도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각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으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와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수받았을 뿐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는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최보원

별지